

공 고 문

법무부공고 제2015 - 326호

제5회 변호사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

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5일
법무부장관

1. 시험일자 : 2016년 1월 4일(월) ~ 1월 8일(금), 4일간(1월 6일 : 휴식일)
2.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시험일자	시험시간 및 시험과목					입실시간
	시험과목	오 전		오 후		
		시간	문형(배점)	시간	문형(배점)	
1월 4일 (월)	공 법	10:00-11:10	선택형(100점)	13:30-15:30	사례형(200점)	- 오전시험 : 09:25 - 오후시험 : 시험시작 35분 전 ※ 시험실개방 08:00
				17:00-19:00	기록형(100점)	
1월 5일 (화)	형사법	10:00-11:10	선택형(100점)	13:30-15:30	사례형(200점)	
				17:00-19:00	기록형(100점)	
1월 6일 (수)	휴 식 일					
1월 7일 (목)	민사법	10:00-12:00	선택형(175점)	14:30-17:30	기록형(175점)	
1월 8일 (금)	민사법 · 전문적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(택1)	10:00-13:30	민사법 사례형(350점)	16:00-18:00	전문적법률분야 에 관한과목(택1) 사례형(160점)	

3. 시험장소

응시표 좌석번호	시험장소		소재지
고려대001~고려대519	고려대학교	우당교양관	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※ 지하철 6호선 안암역
연세대001~연세대426	연세대학교	백양관	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※ 지하철 2호선 신촌역
중앙대001~중앙대385	중앙대학교	103관(간호대학)	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※ 지하철 9호선 중앙대입구역
한양대001~한양대512	한양대학교	제1공학관	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※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
건국대001~건국대539	건국대학교	상허연구관	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※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
충남대001~충남대734	충남대학교	백마교양교육관	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※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(택시 또는 버스 이용)

※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: 2015. 12. 2.(09:00) ~ 2016. 1. 8.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(<http://moj.uwayapply.com>)를 통해 응시표 출력 →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) 좌석번호란에 “고려대063”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(위 표 참조)이며,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“응시자 시험실 배치표”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,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.

☞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.

4. 응시자준수사항 등

가.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나.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

-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(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),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
-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지정된 시간(시험시작 5분전)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,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 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(시험시작 5분전)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.
 - ※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,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.
- 답안지에 수험번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,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

다. 시험시간 중

-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,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(포스트-잇, 메모지, 책받침 등 포함)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.(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)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 - ※ 단, 민사법 기록형·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(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)

라.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

-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·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·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 - 답안지는 반드시 “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”(사인펜에 ‘컴퓨터용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)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 -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.(단,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)
- ※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마.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

-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 -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,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.
 -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,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, 수정액·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,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시험용 법전에는 ‘포스트-잇’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※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바. 시험종료 시

-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,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.
-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.

사. 기 타
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

5.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1.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
2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
3.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
4.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5.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.

1.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,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
2.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,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
3.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4. 수험번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·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·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
5.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
6.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(단,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)

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,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.